월간 건설경기 동향



2007 5

- ☑ '07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(CBSI)는 전월대비 5.5p 상승한 81.3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됐지만, 지수 자체는 기준선 (100)에 못미쳐 체감경기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.
- ☑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07년 3월 공공과 민간부문의 골고른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0.5% 증가한 9조 5,387억원을 기록함.
 - 결국 1월(14.2%), 2월(32.4%)에 이어 3월에도 건설수주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함로
 써 건설수주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 상승세를 유지했으며, 1/4분기 전체로
 는 작년 동기비 25.6%가 증가함.
 - 그러나 3월 민간 주택수주액이 공공 주택과 달리 전년동월대비 33.2%나 감소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의 축소 우려가 현실화됨.
- ☑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2007년 3월 공공부문의 공사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했으며, 이로써 1/4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6.5% 증가함.
- ☑ '06년 4/4분기 재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민간 주택부문 수주가 주거용 건축착공 및 기성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작년 2, 3분기 건설기성과 건설투자가 좋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4월 이후 건 설기성과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가 예상됨.

CERI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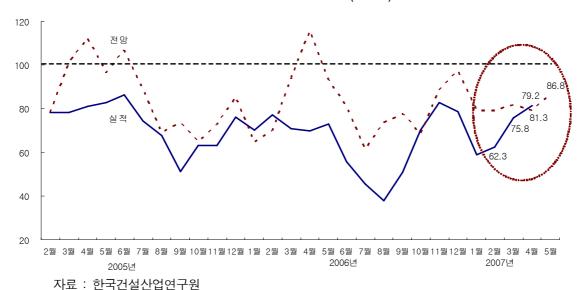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○ 건설기업 체감경기

-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(CBSI)는 전월대비 5.5p 상승한 81.3을 기록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됨.
 - 지수가 2월(3.4p), 3월(13.4p)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해 작년 11월 수준 (82.8)을 회복함.
 - 3개월 연속된 지수상승은 지난 1월 1.11대책으로 급락한 지수의 통계적 반 등 및 봄철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결합된 현상으로 판단됨.
 -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임.
 -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 91.7, 중견업체 86.7, 그리고 중소업체가 63.0을 기록해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및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 도 여전함.

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(CBSI) 추이



● 선행지표_건설수주

•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07년 3월 공공과 민간부문의 골고른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0.5% 증가한 9조 5,387억원을 기록함.

- 우선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0.0%나 증가한 2조 8,784억원을 기록했는데,
 특히 공공부문의 주택발주물량 증가로 공공 주택수주액이 전년동월대비
 172.9%나 증가하여 공공 건축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89.1%가 증가함.
 -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건축수주액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공공 토목수 주액도 재정발주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9.0%가 증가 함으로써 전체 공공 수주액 증가를 견인함.
- 한편, 민간부문은 비주거용 건축수주액의 증가(전년동월대비 129.5%)와 토목수주액의 증가(전년동월대비 152.2%)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6.8%가 증가한 6조 6,603억원을 기록함.
 -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수주액은 주 거용 건축수주액이 전년동월대비 33.2%나 감소한 반면, 비주거용 건축수주액이 129.5%나 급증함으로써 민간부문 전체 수주액 증가를 견인함.
 - 주거용 건축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72.9%나 급증한 공공부문과 달리 전년동월대비 33.2%나 감소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의 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음.
 - 민간 토목수주액의 급증(전년동월대비 152.2%증가)은 대형 발전공사 등이 3월에 집중 발주됐기 때문임.
- 결국 1월(14.2%), 2월(32.4%)에 이어 3월에도 건설수주가 전년동월대비 증가 함로써 건설수주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 상승세를 유지했으며, 1/4분기 전체로는 작년 동기비 25.6%가 증가함.
- 그러나 3월 민간 주택수주액이 공공 주택과 달리 전년동월대비 33.2%나 감소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의 축소 우려가 현실화 되고있고, 동시에 주택공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.

2007년 3월 건설수주

(단위: 십억원, %)

| 구 분 | 합계 | 발주처별 | | | | | | 공종별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공공 | | | 민간 | | | 토목 | 고소 | | |
| | | 0 | 토목 | 건축 | | 토목 | 건축 | 上寸 | 건축 | 주택 | 비주택 |
| 2007년 3월 | 9,538.7 | 2,878.4 | 2,167.9 | 710.5 | 6,660.3 | 1,504.2 | 5,156.1 | 3,672.1 | 5,866.6 | 2,638.4 | 3,228.2 |
| 증감률 | 30.5 | 40.0 | 29.0 | 89.1 | 26.8 | 152.2 | 10.7 | 61.3 | 16.6 | -25.3 | 115.4 |
| 2007년 1~3월 | 24,393.8 | 6,925.3 | 5,143.9 | 1,781.4 | 17,468.5 | 2,274.7 | 15, 193.7 | 7,418.6 | 16,975.2 | 9,678.9 | 7,296.3 |
| 증감률 | 25.6 | 30.0 | 17.8 | 85.6 | 23.9 | 48.2 | 20.9 | 25.7 | 25.5 | 16.9 | 39.1 |

자료 : 대한건설협회

○ 동행지표_건설기성 및 건축착공면적

-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2007년 3월 공공부문의 공사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했으며, 이로써 1/4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6.5% 증가함.
 - 발주자 부문별로는 전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공공부문이 전년동월대비 16.0% 증가했으며,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동월대비 3.6% 감소함.
 -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전년동월대비 2.1% 감소했으며, 토목부문이 전년 동월대비 9.7% 증가함.

건설경기 동행지표 추이

(단위: 전년동기비 증감률)

| 구 분 | 2002 | 2003 | 2004 | 2005 | 2006 | 2007.1 | 2007.2 | 2007.3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건설기성(경상) | 11.2 | 16.6 | 11.1 | 4.1 | 3.7 | 10.5 | 8.3 | 2.0 |
| 건설투자(불변) | 5.3 | 7.9 | 1.1 | -0.2 | -0.4 | _ | _ | - |
| 건축착공면적 | 48.6 | 3.6 | -16.2 | -7.8 | 0.8 | _ | _ | _ |

자료 : 통계청(2007.2, 3의 건설기성은 잠정치), 한국은행(2006 건설투자는 잠정치)

이로써 건설기성은 작년 4/4분기 전년동기비 6.0%(잠정치)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3/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,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10.5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, 2월 전년대비 8.3% 증가로 둔화됐다가 3월 다시 전년대비 2.0% 증가에 그침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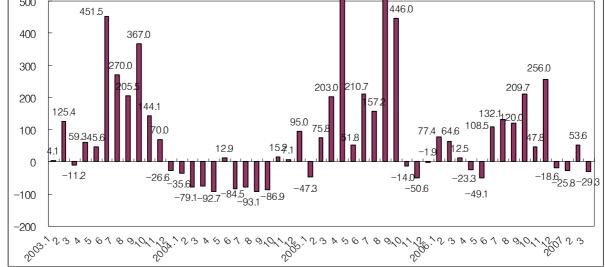
-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설기성이 전년대비 좋지 않았으므로 4월 이후 건설기성은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.

제건축재개발 수주 동향

- 지난 2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3.6% 증가하였던 재건축·재개발 수주는 3월 들어 다시 작년 12월(-18.6%), 1월(-25.8%)과 마찬가지로 전년동 월대비 29.3% 감소하였음.
 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개발은 전년동월대비 20.6% 감소했으며, 재건축은 전년동월대비 50.1%나 감소했음.
 - 결국 지난 2월 기저효과 등으로 잠시 증가했던 재건축 재개발 수주는 작 년 12월(-18.6%), 1월(-25.8%)과 마찬가지로 다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음.
 - 작년 안전진단기준,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와 올 초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골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재건축·재개발 수주는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전년동월비(%) 1211.2 514.5 500 446.0 451.5 400 367.0 3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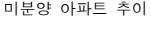
재건축·재개발 수주 금액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한국건설산업연구원

◯ 미분양 실적 및 아파트 매매가격

- ▶ 미분양 아파트 **3**개월만에 감소
- 미분양 아파트는 3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2007년 2월 미분양 아파트는 73,619호로 지난달(75,616호)에 비해 2.6%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만호를 넘어서고 있음.
 - 현재 공급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는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 위축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.
-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역시 감소함. 수도권은 4,263호로 전월 대비 6.2%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도 69,356호로 2.4% 감소함.
- ▶ 아파트 매매가격 **1**년 **7**개월 만에 하락
- ·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-0.2%로 1년 7개월만(2005년 9월 이후)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재건축 아파트는 전월대비 1.7% 하락하여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, 하락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(-0.6%(2월) → -1.0%(3월) → -1.7%(4월)).



80,000 (호) 71,072 71,072 69,356 60,000 750,000 750,000 755,00

자료: 건설교통부

아파트 매매가격 추이



자료: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(주)

○ 건설·부동산 정책 동향

- ▶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
- 건설산업기본법(이하 '건산법')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반·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비롯해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,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심사,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및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등이 이뤄졌음.
- 국회 의결된 건산법은 공포안이 5월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, 하부 시행령
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돼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, 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법령 공포일에 맞춰 시행될 것임. 건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일반·전문간 겸업제한 폐지('08.1.1 시행)
 - 단,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업종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상호 2011.12.31 까지는 겸업할 수 없음.
 - '08.1.1부터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일 반 또는 전문업종의 실적중 일부를 신규등록 업종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함.
- 시공참여자(전문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자)제도 폐지('08.1.1)
 - 건설하도급이 아닌 자재·장비공급 형태의 하도급은 가능함.
-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심사('08.1.1 시행)
 -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(최저가공사대상 시행예정) 입찰시 하도급주요공 종, 물량,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예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
 - 낙찰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함(향후 시행

령 개정시 구체적 명시 계획).

- 계약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 태료를 부과함.

•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명확화

-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중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로서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만 전문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('09.7.1부터 시행).

• 하수급인등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

-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급인의 부도, 파산 등의 일정사유 발생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함(제35조제2항·제5항 및 제6항 신설).
-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 도급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된 것으로 봄(제35조제3항 신설).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원수급인의 임 의해지를 방지하고자 함(제34조제2항 신설).
-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대금 지급 보호 방안 준용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함(제32조제4항 개 정).
-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(도급금액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) 시정명령을 통하여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함 (제22조제5항, 제81조제5호).

•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

- 무등록시공, 등록증대여, 일괄하도급 등의 경우 처벌강화: 1년이하의 징역,

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

- 원수급인이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 하도록 지시하거나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하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).

• 그밖의 제도개선

- 종합건설업의 등록, 실적,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를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(대한건설협회)에 위탁함.
- 자기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가능하던 골프장, 유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물은 건설업자(종합건설업 등록자)만 시공토록 함.
-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.

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TFT

·백성준 sjjly@cerik.re.kr

'이홍일 hilee@cerik.re.kr

'강민석 mskang@cerik.re.kr